#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1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전재수・이기헌・허 영

신영대 · 김정호 · 민홍철

김태선 · 복기왕 · 위성곤

이학영ㆍ허성무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처분에 있어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73조, 제175조제1항, 제278조, 제295조제2항 및 제303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

제17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법원"을 각각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

제278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가압류할 물건이 선박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95조제2항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으로 한다.

제303조 중 "지방법원"을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3조(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제173조(관할법원)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u>지방법원</u> 으로 한다.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	제175조(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		
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선	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①		
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			
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			
을 경우에는 선적(船籍)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u>지방법원</u> (선적	지방법원		
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또는 해사전문법원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			
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u>지방법</u>	지방법		
<u>원</u> 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원 또는 해사전문법원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	제278조(가압류법원)		
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			

하는 <u>지방법원</u>이나 본안의 관 할법원이 관할한다.

-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 (생략)
  - ②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 ③ (생 략)
-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
원(가압류할 물건이 선박인 경
<u>우에 한정한다)</u>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 (현
행과 같음)
②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
법원
③ (현행과 같음)
제303조(관할법원)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
원(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
<u>에 한정한다)</u>